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, Tower1 13층(청진동, 그랑서울) Tel : 02-3774-6619 Fax : 02-3774-6619 담당자 : 이재민

문서번호	리테일2본부2017-342	시행일자	2017.12.01
수신	전체 판매회사	참조	
제목	소규모펀드 공시의 건(2017년 11월)		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사(행)에서 판매하고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공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공시 내용 : 소규모 펀드 공시

나. 공시 근거 : 2010년 6월 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-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4호, 5호

다. 대상 펀드 : 불임_1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1개월_2017년 11월
불임_2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계획_2017년 11월
불임_3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실적_2017년 11월
불임_4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실적(세부)_2017년 11월
불임_5 소규모펀드비율_2017년 11월 참조.

라. 공시 내용 : 이 펀드는 설정(설립)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,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수 있다는 사실

마. 발생일 : 2017년 11월 1일(수) ~ 11월 30일(목)

바. 공시일 : 2017년 12월 1일(금)

사. 불 임 : 불임_1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1개월_2017년 11월
불임_2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계획_2017년 11월
불임_3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실적_2017년 11월
불임_4 소규모펀드공시대상펀드_이행실적(세부)_2017년 11월
불임_5 소규모펀드비율_2017년 11월 참조.

※ 본 건은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(수시공시)에 근거한 수시공시 사항이며, 동 조 제2항에 의한 방법(인터넷 홈페이지 공시,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고지, 본점/지점 그밖의 영업소 게시)으로 공시 하여야 함.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